

대전지방법원 2021. 8. 10 선고 2018가단22034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영진, 김진태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류지웅, 박현순, 박현혜

변 론 종 결 2021. 4. 27.

판 결 선 고 2021. 8. 10.

주 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와 C 사이에 서울 은평구 D 대 181.4㎡ 중 31.935/181.4 지분에 관하여 2017. 8. 7. 체결된 매매계약을 88,045,022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8,045,022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88,045,022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7.부터(원고의 청구취지를 선택한다)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양수금채권

C은 2011. 8. 26.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로부터 중고차(볼보덤프트럭)구매대출 명목으로 6,600만원을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라 한다), E은 위 대출금 채권을 F 주식회사에 양도하였다. 원고는 2015. 3. 27. F 주식회사로부터 위 대출금채권을 양수한 후 C을 상대로 위 대출금채무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C은 G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62,846,009원 및 그중 42,959,286원에 대하여 2015. 3.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2015. 9. 8.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전133640호).

나. C의 부동산 처분과 사해행위취소소송

1) C은 소유하던 서울 은평구 D 대 181.4㎡ 중 31.945/181.4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2011. 9. 26.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매매계약에 기하여 2011. 10. 26.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아하 '1차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2) 이 사건 대출금채권자였던 E은 2012. 2.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서울서부지방법원 2012카단1193)을 받아 그 등기를 마쳤고(이하 '이 사건 가처분등기'라 한다), C의 다른 채권자였던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도 2012. 3.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그 등기를 마쳤다.

3) H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단52985호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C과 피고

사이의 2011. 9. 26.자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1차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3. 3. 13. 승소확정(이하 ‘선행 사해행위취소소송’이라 한다)되었다.

다. 원고의 이 사건 가처분등기 해제

원고는 2015. 12. 14.경 피고에게 ‘부동산가처분해제 및 채권채무 부존재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하고,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를 작성하여 주고 피고로부터 1,000만원을 지급받은 후 이 사건 가처분 해제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2016. 1. 12. 이 사건 가처분등기가 말소되었다.

부동산가처분해제 및 채권채무 부존재 확인서

■ 대출자 성명 : C

■ 대출내역 : (주)E 중고차(불보덤프트럭)구매대출

■ 가처분 사건번호 : 2012카단1193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서울서부지방법원

■ 가처분 물건지 : 서울 은평구 D

상기의 부동산 가처분 사건에 대하여 아래의 합의금 변제사실에 근거하여 2015년 12월 일자로 부동산가처분 해제조치함을 확인합니다.

합의금 및 법비용 전액입금시 B(피고)와 (주)A(원고) 채권채무관계는 부존재함을 확인합니다.

- 아 래 -

1. 합의금 변제액 : 10,000,000원
2. 변제인 : B(피고)
3. 변제일 : 2015. 10. 28. 2백만원, 2015. 12. 14. 800만원, 법비용 별도
4. 변제방법 : 채무부존재확인서 및 부동산가처분해제증명서 접수증명원과 맞교환

라. 원상회복 및 소유권이전등기

- 1) H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3. 21. 선행 사해행위취소소송 판결에 따라 피고의 1차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시킨 후, 2017. 3. 29.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가, 2017. 7. 10. 위 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2) C은 2017. 8. 7.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8. 7.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피고는 2017. 8. 27. I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사해행위 취소 청구(주위적 청구)

원고는 C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C이 자신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바, C과 피고 사이의 위 매매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C이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의하여 원상회복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다시 매도한 것은 무권리자의 처분에 불과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I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피고는 가액배상으로서 원고에게 C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및 지연손해금 합계 88,045,022원과 이에 대한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부당이득반환청구(예비적 청구)

피고는 2017. 8. 7.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8,0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위 부동산의 시가는 2억원을 상회함에도 이에 훨씬 못미치는 매매가로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아니라 그 매매대금도 지급하지 않은 채 소유권을 이전받아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였으므로, C의 채권자인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확인서로써 이 사건 대출금채권에 관련한 채권채무관계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여 주었음에도 위 대출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은 부당하다.

2) 1차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후 선행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취소채권자인 H과 C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가 취소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가 1차 소유권이전등기에 기한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일 뿐 C과 피고 사이에 새로운 처분행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있어도 제소하지 않기로 부제소 합의를 한 경우 이에 위배되어 제기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고, 또한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신의성실의 원칙(민사소송법 제1조 제2항)에도 어긋나는 것이므로, 소가 부제소합의에 위배되어 제기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소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부제소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과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합의 당사자가 처분할 권리 있는 범위 내의 것으로서 특정한 법률관계에 한정될 때 허용되며, 그 합의 당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다. 부제소합의의 효력 유무나 범위를 둘러싸고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후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63988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위 법리에 비추어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C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수한 채권자로서 C이 피고에게 1차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이 사건 가처분등기를 마친 상태에서 피고에게 ‘피고가 원고에게 협의금 1,000만원을 지급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채권채무관계는 부존재함을 확인하고 이 사건 가처분등기를 말소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이에 따라 피고로부터 1,000만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가처분등기를 말소하여 준 점, 위 확인서에는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부존재 확인을 해준 대상은 이 사건 대출금채권임을 알 수 있는 점, 피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수익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C의 채권자인 원고와 위와 같은 협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향후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대출금채권과 관련한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피고와 사이에 합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사해행위 또는 원인무효임을 전제로 가액배상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나 채권자대위로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 모두 위와 같은 부제소합의를 위반하여 제기된 것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설령 부제소합의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원고의 청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사해행위의 취소는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데에 그치고 채무자와 수익자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선행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명의의 1차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채무자인 C의 등기명의를 회복되었더라도, 채무자인 C이 직접 그 부동산을 취득하여 권리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2다274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C과 피고 사이에서 여전히 유효한 2011. 9. 26.자 매매계약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 위 원상회복 이후에 C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적극채산을 감소시키는 새로운 처분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보기 어렵다[원고가 원용하는 판례(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다217980 판결)는 채무자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등기명의를 회복한 후 제3자에게 처분한 사안에 대한 판단으로서, 이 사건과 같이 채무자가 다시 수익자에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더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한다.

판사 오명희